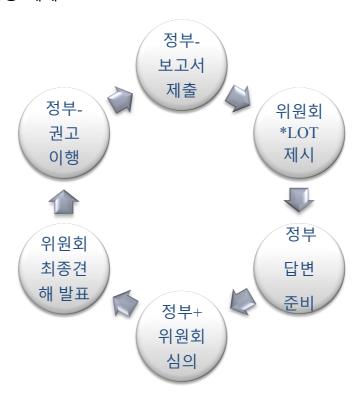
#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활동 경과

## 이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아시아인권문화연대)

####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약칭으로 CERD라 부른다. 인종차별철폐협약 8조에 근거하여 1969년 설치되었다. 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조약기구)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제도나, UPR(국가인권정기검토제도)에 비해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으로서, 앞선 두 제도 보다 더 강한 이행 의무가 있다.
- 대한민국은 2007년, 2012년에이어서 6년만인 2018년 12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행모니터링 체계



\* List of Themes

#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1965년 유엔총회에 채택되었고 1969년 발효되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하였다. 전문과 25개조항으로 구성된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descent)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1조)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다. 우선 국가에의한 인종차별의 실행과 지원, 인종차별의 선동 금지(2조 1항 (a)~(c), 3조, 4조 (c)). 개인 또는 단체가 실행하는 인종차별의 금지조치와 인종주의적 표현의 처벌규제와인종 주의적 단체의 금지조치 등을 취할 의무(2조 1항 (d), 4조 (a), (b)). 그리고 인종적 편견의 제거와 인종간의이해의 촉진을 위한 조치(2조 1항 (e), 7조), 인종차별의회생자의구제 조치(6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종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으로의 적극적 우대조치(2조 2항). 협약의 실시조치에는 보고제도, 국가통보제도 및 개인통보제도가 있다(9~14조).

# 3.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



\*List of Themes는 List of Issues와 달리 정부의 서면답변을 요하지 않고 심의 주제/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CO)

- 최종 견해가 채택되기 이전 본 심의에서는 당사국 대표단과 조약기구 위원간 이틀에 걸쳐 각 3시간씩, 총 6시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이 이어진다. 이후 사전에 제출된 보고서들의 내용과 본 심의 당시 이뤄진 대화를 토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항과 주요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심의는 마무리 된다. 당사국은 이후 다음 정기 심의까지 특히 최종 견해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해야한다.

#### 4. 국가보고서 심의 및 시민사회 사무국 운영 일정

2017. 10. 17.	정부 17-19차 통합보고서 제출	
	(기한: 2016. 1. 4.)	
		대안 보고서 준비 및 제출
2018. 3	심의 대응 시민사회사무국 구성	심의대응 전략 준비
		관련 자료 준비
2018. 4-6	시민사회 보고서 목차, 내용 및 작성자	사무국 활동 방향 합의
	확정 , 인종차별 보고대회 준비	
2018. 7	보고대회 개최	보고대회 결과, 보고서 작
		성 시 반영
2018. 8.	시민사회 보고서 완성 및 영문 번역	
2018. 9	감수 및 제출 완료	
		- 대안보고서(Alternative
2018. 10-11		Report)
	Country Rapporteur "List of Themes" 정	- List of Themes를 위한
	해서 정부에 송부 및 홈페이지 공개*	정보제공
		- List of Themes에 대한
		답변 준비
2018. 12. 3 – 4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관련 활동 진행
	(97차 회의) 12월 3일~4일	
	이후 후속 활동진행	최종견해 내용 홍보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

## 5.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참여 단위

## ■ 참여자 및 단체

공익법센터어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E-6-2 비자대안네트워크, (이상 단체)

김현미(연세대), 김철효(전북대), 박경태(성공회대), 이경숙(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

정은(창원대), 전의령(전북대) (이상 개인)

## ■ 사무국 실무그룹 활동

김정우((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진(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김태정(두레방), 김현미(연세대), 박경태(성공회대),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탁건(재단법인동천), 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 장보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혜실(이주민방송), 최계영(서울대),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6. 활동방향.

- 한국사회 인종차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는 과정
- 시민사회보고서 준비의 과정이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방향 설정
- 광범위한 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인종차별 심의와 이후 최종 견해를 활용한 후속 과정 진행